

청주교육대학교 국외 교류대학과의 학점 상호인정 규정

제정 2001. 3. 1. 규칙 제1067호
제1차 개정 2005. 5. 12. 규칙 제1125호
제2차 개정 2009. 2. 4. 규칙 제1216호
제3차 개정 2025. 12. 10. 규칙 제167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외 교류대학(이하“교류대학”이라 한다) 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교류대학 간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5.12.10.>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5.12.10.>

1. “교류대학”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MOU, MOA 등)을 체결하였거나, 총장이 별도로 인정한 국외 소재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2. “국제교류센터”라 함은 교류학생 선발·지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교 기관을 말한다.
3. “교무처”라 함은 교과과정 운영 및 학점 인정·등재 업무를 담당하는 본교 부서를 말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교류대학 수학

제4조(지원자격)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본교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10.>

1. 본교에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개정 2025.12.10.>
2. 기 이수한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2.75(학부), 3.25(교육대학원) 이상인 자 <개정 2025.12.10.>
3. 교류대학 수학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자 <개정 2025.12.10.>
4. 학칙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5조(지원 및 제출서류) 지원자는 교류대학 수강 희망 학기 시작 4개월 전에 다음 서류를 해당 학과(교육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1. 교류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 1부(별지1, 수강할 교과목 목록과 설명서 별첨) <개정 2025.12.10.>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전체 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교류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5.12.10.>

제6조(선발) ① 학과장(대학원장)은 지원 서류를 검토한 후 2주 이내로 교무처(교육대학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교무처(교육대학원)에서는 교무위원회(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학생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12.10.>

② 총장은 전항의 추천서류를 검토하여 교류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판별한 후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25.12.10.>

③ 대학 간 교류협정에 의하여 교류학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선발한다.

제7조(수학기간) 교류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2학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8조(등록) ① 교류대학으로부터 수학을 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류대학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휴학 기간 중에 교류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학기를 인정받지 못한다. <개정 2025.12.10.>

③ 교류대학 등록 시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 및 교류대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2.10.>

제9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단,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대학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1. 교류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강할 교과목 목록과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2. 교류대학에서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본교의 지도교수 또는 소속학과의 학과장의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10조(학점 인정) ① 학생은 수학기간이 만료되면 수학한 교류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본교의 교무처(교육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학점 인정 범위는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사과정에서는 학기 당 18학점 이내로 인정하고, 석사과정에서는 학기 당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 여부는 교무위원회(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12.10.>

③ 최종 인정된 학점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하되, 교과목 명칭, 이수 학

점, 성적 등은 본교의 교과목, 이수 학점, 성적으로 전환하여 표기한다. <개정 2025.12.10.>

- ④ 교류대학 교과목의 이수 학점이 본교의 대체 교과목의 이수 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나,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복수의 유사 교과목 이수 학점을 합산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 ⑤ 교류대학에서 P/F로 평가하는 교과목은 본교에서 등급제로 평가하는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류대학의 성적표에 성적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제11조(학점 인정 신청) ① 교류대학에서의 수학 종료 후 교류학점 인정신청서(별지 3), 교류대학 강의계획서 및 과목 해설서, 성적증명서를 교무처(교육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

- ② 교류대학 성적은 다음과 같이 본교 성적표에 등재한다. <신설 2025.12.10.>
 - 1. 백분위 점수 부여 시 그대로 등재
 - 2. 미부여 시 성적변환표에 의거 변환
 - 3. 구간 점수 표시 시 중간값 등재
 - 4. 그 외는 평가체계에 따라 교무처장이 환산 등재
- ③ 인정된 학점 및 성적은 “교류”로 표시하고 해당 학기의 석차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2.10.>

제12조(교류수학의 취소) ① 학기 개시 후 교류수학을 취소하기 원하는 학생은 본교 수업일수 4분의1 이내에 교류수학 취소원을 교무처(교육대학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류수학을 취소한 당해 학기는 휴학 처리된다. <신설 2025.12.10.>

② 교류대학의 취소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교류수학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5.12.10.>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시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5.12.10.>

제3장 교류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4조(지원자격)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대학 학생은 소속 대학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10.>

제15조(지원 및 제출서류) ① 교류대학은 지원자를 본교에서의 수강 희망 학기 시작 4개월 전에 본교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교류학생으로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본교 국제교류센터(교육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1. 청주교육대학교 수학 허가 신청서 1부(별지2)
2. 재학증명서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신설 2025.12.10.>
4.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개정 2025.12.10.>

제16조(수학허가 및 안내) 본교 국제교류센터(교육대학원)는 지원서류 심사 후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여 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교류대학에 통보한다. <개정 2025.12.10.>

제17조(수학기한) 수학기간은 1년(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18조(등록) 교류학생은 교류수학 학기 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19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센터 전담교수(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 이루어진다. <개정 2025.12.10.>

제20조(취득학점) ① 교류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10.>

② 교류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수학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류대학에 통보한다. <개정 2025.12.10.>

③ 교류대학 및 교류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 취득 학점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21조(학생증 발급 및 시설물 이용) 수학허가를 받은 교류학생은 학생증을 발급받고 도서관·실험실습실 등 본교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22조(교류수학의 취소) ① 교류대학 학생이 수학기한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할 시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② 교류대학 학생이 본교에서의 수학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류대학의 절차에 따라 교류대학에 수학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본교로 교류대학의 수학취소 통보가 도달하면 수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교류수학 취소 신청은 본교의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기간에서만 가능하다. <신설 2025.12.10.>

제23조(기타) 본교와 교류대학은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시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5.12.10.>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9. 2. 4. 규칙 제12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78호, 2025.1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교류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

소속	학과				학년	
성명	(한글)	본교등록 여부	등록() 휴학()	생년월일		
	(한자)			학번		
수학구분	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기타학생()					
수학신청대학						
학기구분	정규학기() 계절학기()					
수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외국어능력	영어권 : TOEIC 점, 비영어권 :					
수학계획	이수예정교과목			본교관련교과목		학과장 확인
	이수 구분	학점	교과목명	이수 구분	학 점	

위와 같이 외국대학 수학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첨부 : 이수예정 교과목 설명서 각 1부.

(별지 2)

청주교육대학교 수학 허가 신청서

성명			성별		사진
전화번호	본국)	외국인 등록번호			
	한국)	생년월일			
주소	본국) 한국)				
소속대학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				
지원대학	청주교육대학교 학과				
수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학예정 교과목	교과목명	학점수	개설학부·학과		비고

위와 같이 귀 대학 수학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첨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별지 3)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성명		교류대학					
심화과정		교류기간	20 . . . ~ 20 . . .				
학번		총 취득학점					
연락처		인정 신청학점					
학점인정 신청 내역							
교류대학 취득 과목			본교 인정요청 과목				
과목명	학점	등급	해당학기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등급

- ※ 첨부 : 1. 성적증명서(원본 및 번역본)
2. 이수 교과목 수업계획서(원본 및 번역본)
3. 교류대학 학점별 점수체계표

위와 같이 타대학 취득학점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생

(인/서명)

교무처장 귀하